

예산군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제 64 호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03. 5. 20.

발 의 자 : 조기덕의원의외 2인

□ 제안이유

-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은 다양한 의사를 가진 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임
- 의회의 성숙된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의원들에게 보다 많은 발언 기회와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, 본회의의 기능을 강화코자 함.
- 따라서, 의회가 심의중인 각종 안전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이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한된 발언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이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3조의2 제1항)
-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, 소견이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음(안 제33조의2 제2항)
-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신청토록 함(안 제33조의2 제3항)
-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 할 수 있음(안 제33조의2 제5항)

□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63조(회의규칙)
- 국회법 제105조(5분자유발언)
- 충청남도의회의회의규칙 제38조의2(5분발언)

예산군의회 규칙 제 호

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 제4절 제33조 다음에 “제33조의2(5분 자유발언)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33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 할 수 있다.

②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,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.

③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④5분 자유발언의 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⑤의장은 발언요지를 접수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신구조문대비표】

현 행	개 정 안
(신 설)	<p>제33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 할 수 있다.</p> <p>②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,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.</p> <p>③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④5분 자유발언의 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</p> <p>⑤의장은 발언요지를 접수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.</p>